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4월 2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22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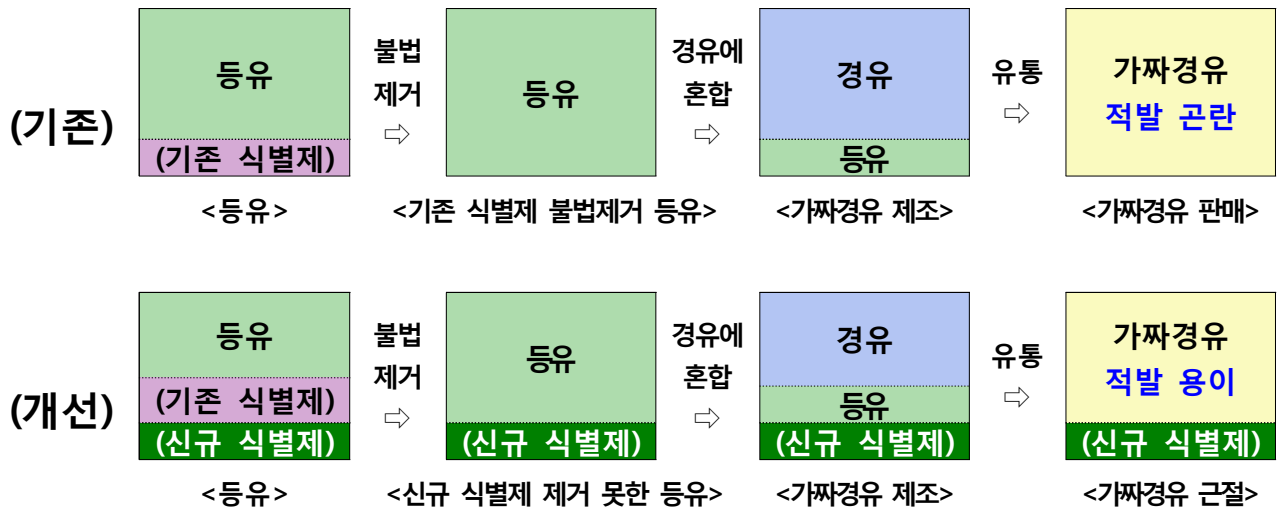
배포일시	2018. 4. 20. (금)	담당부서	석유산업과
담당과장	박재영 과장 (044-203-5220)	담 당 자	송홍석 사무관(044-203-5228)

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신규 식별제 도입

- *「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」 개정*
- *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제거가 어려운 새 식별제 도입*
- *생산·수입단계는 '18년 11월부터, 유통단계는 '19년 5월부터 적용*

□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**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**한다.

*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, 부생연료유 등이 혼합될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'00년부터 Unimark® 1494 DB를 사용 중

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백운규)는 가짜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**새로운 식별제를 추가**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」를 최근 개정했다.

□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되었는데 최근에는 **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**(96%, ’17년)**을 차지**하고 있다.

《 가짜석유 적발 현황 》



○ 가짜휘발유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**용제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관리를 강화**함에 따라 가짜 휘발유는 거의 사라졌다.

○ 반면,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**가격차**(441원/ℓ)*로 **인한 부당이득이 높기 때문**에 등유를 경유와 혼합한 가짜경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

* 경유 1,348.5원/ℓ, 등유 907.1원/ℓ (오피넷, ’18.4월 1주 가격 기준)

○ 특히,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,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 후 **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**하고 있다.

□ 이에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**‘ACCUTRACE S10 Fuel Marker’를**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.

○ **‘ACCUTRACE S10 Fuel Marker’**는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**영국에서도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**이다.

□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정유사, 수입사 등 **생산·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**하고 일반대리점, 주유소, 일반판매소 등 **유통단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**할 계획이다.

□ 그동안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, 출력 저하,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**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**을 미치고 가짜경유로 인한 **탈루세액이 약 6,400억 원**으로 추정되는 등 **그 폐해가 심대한 것으로 지적**되어 왔다.

○ 산업부는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해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강화함에 따라 **가짜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**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【참고】 신규 식별제 도입 경과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송홍석 사무관(☎ 044-203-52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신규 식별제 도입 경과

□ 도입 배경

○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현행 식별제*가 활성탄 등으로 제거되어 **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법정식별제 도입**

* 현재는 '00년부터 Unimark 1494 DB(美 UCM)를 등유식별제로 사용 중

□ 도입 경과

○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(13명)의 평가 결과 **Dow Chemical의 제품을 신규 식별제**(1순위 제품)**로 선정**('16.12월)

- 식별제의 제거 저항성*, 가격, 기술지원, 공급능력 등 **다양한 평가항목을 평가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**

* 식별제를 제거하기 어려운 정도로 흡착체(활성탄·백토) 이용, 산·염기 처리, 증류방식 등 **각종 제거방법의 현실가능성, 대응력 등을 고려해 평가**

○ 신규 식별제를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**신규화학물질로 등록 완료**('17.6월)

○ 신규 식별제를 등유에 첨가 후 **현장적용 여부**(저장시설 흡착 등), **식별제 농도변화 등을 분석하는 실증테스트**(석유관리원, '17.8~10월) **완료**

□ 법정화 절차

○ 우선순위로 선정된 신규 식별제에 대한 **법정화 절차 진행**

- **유해성 심사**(환경과학원, '17.7~12), **품질관리심의위원회** 심의('18.1), **품질기준**(산업부 고시) **개정**('18.4) 등의 절차 진행

유해성 심사 (환경과학원)	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(석유관리원)	고시 개정 (산업부)	현장 적용
'17. 7월 ~ 12월	'18. 1월	'18. 4월	'18. 11월 ~